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01

기업애로

01 친환경 인증 기준 및 절차 규제 개선

02 고체 납[Pb] 유해화학물질 규제 완화

03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04 적극적 법령해석을 통한 지식산업센터 입주 활성화

05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불편 해소를 위한 비제조업 입주기업 부대시설 설치 근거조항 신설 건의

06 카페인 등 식품 기피성분 표기규제 개선

07 산업단지 입주협약 권한 확대로 기업투자 활성화

08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완화로 불합리한 기업규제 개선



친환경 인증 기준 및 절차 규제 개선

친환경 재료를 활용하여 생산된 제품에 맞는 인증 시험기준 신설

추진부서 | 경기도 규제개혁과 ☎031-8008-4283

개선배경

- 환경표지 인증(친환경 마크제도)제도는 같은 용도의 제품에 비해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인증 부여
  * 관계법령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 인증기관 :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해당 기업은 환경친화적 제품을 만들기 위해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지 않은 주방세제를 개발하였으나, 친환경 인증마크를 표시하기 위한 인증 시험을 진행할 수 없음
  – 주방세제 기능시험의 경우 발생된 거품의 해로움을 측정하는 방식이나 해당 제품과 같이 물에 닿으면 거품이 빠르게 없어져서 현재 실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개선내용

-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지 않거나 소량으로 제조된 주방용 세제에 대한 기능단위 시험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시판제품 등을 조사하여 계면활성제 농도 구간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세부적인 시험조건(정치시간, 오염물 투입량, 기포층 두께 설정 등) 분석, 유사 표준, 해외 환경라벨링 현황, 환경표지 내 유사 세제류 기준 등을 참고하여 인증 기준 개정을 검토할 예정임

〈 주방용 세제 시험 〉



추진과정

개선 전	개선 후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 고시 제2022-275호, 2022.12.29.) [별표 2] 환경표지대상제품별 인증기준 (제4조제2항 관련) EL303 주방용 세제(Household Detergents) 8 시험방법 8.2.3 계면활성제 농도가 25 % 미만인 시료의 오염물 투입량 측정 (중략) b) 항온조 내의 세제 용액을 1분간 교반하여 기포를 충분히 발생시킨다. c) 미량주사기 또는 마이크로 피펫으로 오염물을 투입하여 5분간 교반한 후 2분간 정치하면서 기포의 제거 정도를 육안으로 관찰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 고시 제2022-275호, 2022.12.29.) [별표 2] 환경표지대상제품별 인증기준 (제4조제2항 관련) EL303 주방용 세제(Household Detergents) 8 시험방법 8.2.3 계면활성제 농도가 25 % 미만인 시료의 오염물 투입량 측정 (중략) b) 항온조 내의 세제 용액을 1분간 교반하여 기포를 충분히 발생시킨다. **계면활성제 미사용으로 기포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시험을 시행한다.** c) 미량주사기 또는 마이크로 피펫으로 오염물을 투입하여 5분간 교반한 후 2분간 정치하면서 기포의 제거 정도를 육안으로 관찰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중략) **〈계면활성제 미사용시 별도 시험 신설〉**

- ('23.11.) 2023년 하반기 맞손토크 규제발굴 건의(고양시→도)
- ('24.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 관련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 ('24.1.) 환경부 수용
  -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지 않거나 소량으로 제조된 주방용 세제에 대한 기능단위 시험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시판제품 등을 조사하여 계면활성제 농도 구간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부적인 시험조건(정치시간, 오염물 투입량, 기포층 두께 설정 등) 분석, 유사 표준, 해외 환경라벨링 현황, 환경표지 내 유사 세제류 기준 등을 참고하여 인증기준 개정을 검토할 예정임

개선효과

- 10억원 신규투자, 10명 추가고용 및 매출액 100억원 증가



고체 납(Pb) 유해화학물질 규제 완화

일정조건 충족할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검토

추진부서 | 경기도 규제개혁과 ☎031-8008-4283

개선배경

- 납 및 납 제품 취급에 있어서의 위험성은 납을 끓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납흄(열에 의해 증발된 납이 냉각되어 생기는 미세한 중금속 소립자)이 발생되는 경우인데, 이는 주로 납이 함유된 페인트를 도장한 물체를 용접하거나, 끓는 점인 1,700℃ 이상 용해하는 경우 발생함

- 취급과 운반과정에 있어 누출 및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히 낮지만, 관리기준이 엄격하여 비용과 행정처리에 있어 중소기업에 인력 및 금전적 부담이 큼
  - 고체 납은 액체 물질과 달리 취급 과정에서 누출이 일어나지 않지만, 수(水) 용해도가 높은 물질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규제 · 관리되고 있음
  - 고체 납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이 운반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으로 등록된 법인회사에서 고체납을 운반할 수 밖에 없음

개선내용

- 일정조건* 충족할 경우 허가 면제되도록 검토하겠으며, 일반형 화물자동차도 안전시설기준**을 갖추어 설치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현재는 고체 납 운송 가능

* 비산되지 않는 괴 형태로 물반응성이 없어야 함
** 응급조치 장비, 개인보호장구 비치 등

〈 고체납 저장소, 운송차량 현장사진 〉





개선 전	개선 후
■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② 규칙 제31조제7호에서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환경부 고시 「제한물질 · 금지물질의 지정」 별표2 06-5-8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고체 상태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어린이용제품(장난감, 학용품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용도로 제조, 사용, 판매, 보관 · 저장, 운반 등을 하려는 자	■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② 규칙 제31조제7호에서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환경부 고시 「제한물질 · 금지물질의 지정」 별표2 06-5-8호 및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별표 97-1-9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고체 상태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어린이용제품(장난감, 학용품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용도로 제조, 사용, 판매, 보관 · 저장, 운반 등을 하려는 자

추진과정

- ('24.1.) 2024년 상반기 기업규제 발굴 건의(안산상공회의소→도)
- ('24.7.) 2024년 상반기 중앙부처 규제개선 건의과제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도)
  - 일정조건 충족할 경우 허가 면제되도록 검토하겠으며, 일반형 화물 자동차도 안전 시설기준을 갖추어 설치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현재는 고체 납 운송 가능

개선효과

- 화학물관리법의 획일적 적용에서 유독물질 특성에 따라 관리형태 · 수준 등을 차등화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유독물질 취급사업장의 규제비용 등 사회적 부담 경감 및 사업 적기 추진 가능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한 계획수립 및 지원 근거 마련

추진부서 | 경기도 에너지산업과 ☎031-8008-6019

개선배경

- 전국에는 1,311개의 산업단지(국가, 일반, 농공, 첨단)가 지정 및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도에는 195개의 산업단지가 있음
  - 경기도 산업부문의 에너지 중 83.9%가 산업단지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도 78%가 산업단지에서 배출되고 있어, 산업단지의 저탄소 전환이 시급

- 산업단지는 각종 Δ민원, Δ규제, Δ계통, Δ환경파괴 관련 이슈가 적고, 지붕 등을 활용한 유휴부지가 넓어 재생에너지 설치를 위한 잠재량이 높음
  - 전국의 산업단지 지붕을 활용하여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소의 기술적인 잠재량은 12GW
    * 산단 분양면적, 평균 건폐율, 설비 설치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24.6월, 도시와자연)

- 잠재량과 여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의 거부감*, 인센티브 부재 등으로 산업단지 태양광 설치가 저조함
  * 20년 장기계약, 임대 또는 설비 투자 부담, 소유권이전 등
  - 전국 산업단지에 설치된 태양광은 총 2.1GW(8,868개소, '24.2월)

☞ **산단 태양광 활성화를 위해 산단 관리기관이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단 구조고도화사업 추진 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을 세우며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산업집적법」 개정 건의**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산단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관련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 없음 – (당초) 시장정보제공, 에너지이용효율 개선, 에너지공급, 노사관계 증진, 직업훈련 등 산단 구조고도화사업 시, 계획 수립 및 비용 보조에 대한 근거 없음	산단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관련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개선) 시장정보제공, 에너지이용효율 개선,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개선 및 확충**, 에너지공급, 노사관계 증진, 직업훈련 등 산단 구조고도화사업 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방안 계획 수립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보조 가능**

추진과정

- ('24.4.1.) 「산업집적법」을 포함한 경기 RE100 3법* 마련
  * ①「신재생에너지법」 개정,
    ②「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③「산업입지법」, 「산업집적법」 개정
- ('24.4.26.~) 경기 RE100 3법 입법 촉구 캠페인 시행
- ('24.7.16.) 경기 RE100 3법 건의를 위한 경기도-국회 토론회 개최
- ('24.8.28.) 「산업집적법」 개정안 수정 가결(제22대 국회 제417회 2차 본회의)
- ('24.9.20.) 「산업집적법」 개정안 공포

개선효과

-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및 관리기관의 지원으로 전국의 산업단지에 지붕 태양광 설치 시, 설비 투자액 18조원, 고용창출 57,600명 추정
- 경기도의 '산업단지 RE100' 정책 확산으로 중앙부처, 타시도, 민간의 벤치마킹 사례가 증가하는 등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 가속화



이제 무카페인, 무땅콩, 무우유 등 표시가 가능해진겁니다.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은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70%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쉽게 안전한 제품을 확인하고 고를 수 있습니다. 임산부, 유아, 각종 질환자, 알레르기보유자 등 국민의 건강권과 선택권이 보장되었습니다.

안양시는 이 사례로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2022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전국에서 유일한 지자체가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릴 분들이 많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규제혁신·적극행정 인센티브 등 열린 사고와 마음으로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지원해주시는 최대호 안양시장님과 안양시 전 직원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기초지자체의 규제 개선을 응원해주시는 경기도 규제개혁과와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에도 감사드립니다.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연구원 그리고 국무조정실 등 협업해주신 기관에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양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창의적인 사고로 세상을 바꾸는 혁신을 이어갈 것입니다.

기업과 국민 모두를 살리는 규제혁신, 안양시가 항상 함께 합니다.

산업단지 입주협약 권한 확대로 기업투자 활성화

산업단지 입주협약 권한을 시장·군수까지 확대하여,
지방 등 낙후지역의 기업투자 활성화

추진부서 | 양주시 기획예산과 ☎031-8082-5090

개선배경

- 모든 산업단지는 추첨방식에 의해 토지를 공급하되, 산업단지 지정권자와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토지 공급이 가능함.
  - 관련법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제3항
  - 산업단지 면적 30만㎡ 이상 산업단지 지정권자 : 광역시·도지사 (광역지자체)

산업단지 토지 분양 방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제3항



-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시장·군수는 신속하게 기업을 유치하여 위하여,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입주협약을 요청하나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사례 발생
  - 기초지자체 : 국토부, 광역지자체 입주수요 검증을 득한 기업 입주협약 요청
  - 광역지자체 : 업무 가중 등의 사유로 입주협약 거부, 지연 사례 다수 발생



☞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만 있는 입주협약 체결 권한을 시장 · 군수까지 확대할경우 경기북부, 지방 등 낙후지역에 신속하게 양질의 우수기업 유치 가능

개선내용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제1의2 신설"로 시장, 군수도 산업단지 입주협약 체결 및 수의계약으로 산업단지 토지 공급 가능해짐

개선 전	개선 후
1.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산업단지개발계획 중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에 포함되거나 그 기업이 사용하려는 면적이 유치업종별 공급면적에 포함된 경우	1의2. **시 · 군 · 구인 사업시행자가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와 협의를 거쳐 해당 산업단지 입주희망 기업과 입주협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기업의 입주가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 중 법 제6조제5항제6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계획과 이 영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에 부합하는 경우

*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시장,군수가 입주협약을 체결한 경우도 수의계약 가능

개선효과

- 법령개정으로 경기북부, 지방 등 낙후지역의 산업단지 기업유치 활성화
  - (양주시) 약 5천억원 규모 아성 다이소 입주협약 체결 ('24.10.15.)
  - 전국 지자체 입주협약 추진중으로 지방 등 낙후지역의 기업투자 활성화 기대

〈 법령 개정으로 인한 효과 〉

❶ 산업단지 입주협약 행정 소요기간 약 6개월 단축 등 신속한 기업유치 가능

❷ 약 1조3천억원의 기업투자, 3조 7천억원의 기업매출 증대, 약 5천여명의 고용 창출 기대효과 발생

기대효과

기업투자	기업 매출증대	일자리 창출
1조 3천억원	3조 7천억원	5천여명

경제부총리(기재부장관) 정책브리핑 보도자료(2023. 12.)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완화로 불합리한 기업규제 개선

추진부서 | 경기도 화성시 前맑은물시설과 ☎031-5189-6184

개선배경

-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은 총 3개 분야*(①상수도관망의 세척, ②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 · 복구 등 누수 관리 ③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 · 정비)로 분류되어, 각 분야별로 전문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도록 정함

〈 상수도 관망관리대행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기준* 〉

구분		①상수도관망의 세척	②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 · 복구 등 누수 관리	③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 · 정비
계	14명	4명	6명	4명
상수도관망시설		1명	1명	1명
운영관리사 1급 상수도관망시설		2명	2명	2명
운영관리사 2급 건설기술인		1명	1명	1명
*누수복구시 건설기술인			2명	

* 누수복구시의 건설기술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

- 기존 긴급 누수복구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면허를 가진 전문건설업체가 시행하고 있었으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추가로 등록해야 긴급 누수복구공사가 가능하도록 「수도법」의 개정됨

- 이로 인해 기존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자는 누수복구공사에 대한 자격이 발탈되고,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에 대한 투자비용 부담으로 인해 긴급 누수복구공사가 가능한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업체가 절대적 부족하게 되었으며,

- 또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한정되어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제도가 정착되지 않고 일부 업체가 긴급 누수복구공사를 독점하여 수주하는 등 제도가 악용되고 있음

개선내용



● 긴급한 누수복구는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에서 제외

〈수도법 개정(안)〉

개선 전	개선 후
제21조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이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력 ·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 · 복구 등 누수 관리	제21조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① ――――――

〈환경부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 · 관리 업무처리지침〉

개선 전	개선 후
Ⅰ.1.라. 등록신청서 작성 · 검토	Ⅰ.1.라. 등록신청서 작성 · 검토
(3)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신청서	(3)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신청서
② 등록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 양식에 상수도관망의 세척 분야,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 · 복구 등 누수관리 분야,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 · 정비 분야를 구분하여 신청한다. 다만, 두 개 이상의 업무 수행시 각 분야마다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② 등록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 양식에 상수도관망의 세척 분야,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 · 복구 등 누수관리 분야,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 · 정비 분야를 구분하여 신청한다. 다만, 두 개 이상의 업무 수행시 각 분야마다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 수도법 시행령 제34조의4 관련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요건에서 각 분야의 기술인력, 장비 보유현황 기준을 고려하여 신청	※ 수도법 시행령 제34조의4 관련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요건에서 각 분야의 기술인력, 장비 보유현황 기준을 고려하여 신청
※ 두 개 이상 분야 중복 신청 시 기술인력과 장비는 신청 분야에 필요한 기준 인력과 장비(분야별 장비요건)의 수를 합산한 수만큼 보유하여야 함	**※ 두 개 이상 분야 중복 신청 시 시설 · 장비 기준은 중복을 허용하되, 기술인력은 두 개의 분야 신청시 1인,세 개의 분야 신청시 2인까지 중복 허용**

추진과정

- ('23. 8.21.) 규제개선 건의(市→환경부)
  - 긴급누수복구 시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제외 및 인력기준 완화 요청
- ('23.10.19.) 행안부-道-市 현장방문 합동회의(업체 대표 참석)
- ('23.11.03.) 전국 지자체 대상 상수도분야 현안사항 제출(市→한국상수도협회)
- ('23.12.28.)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 · 관리 업무처리지침」 개정(환경부)
  -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2개 분야 등록 시 인력 및 장비 중복허용
- ('24. 3. 26.) 「수도법」 개정 관련 환경부 주관 설명회 시 규제완화 건의
- ('24. 4.) 「수도법」관련 환경부 유권해석
  - 긴급한 누수복구는 상수도설비공사업이 시행함이 타당함
- ('24. 7.1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긴급한 누수복구는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 제외
- ('24. 8.17.) 「수도법 시행령」 개정완료
  -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2개 분야 등록 시 인력 및 장비 중복허용
- ('24. 9. 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상임위원회 상정

개선효과

-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 시 인력 및 설비기준 완화로 투자비용 감소 등 기업의 부담 대폭 감소
- 전국 상하수도설비업 8,700여 업체의 누수복구공사 자격 회복
- 상하수도설비공사업체의 누수복구공사 자격 복원으로 시민에게 신속하고 원활한 수돗물 공급 가능

〈누수복구공사 현장사진〉







Interview

규제샌드박스로 기업의 고민을 해결하다.

경기도 화성시 前 맑은물시설과 김성규 031-5189-6184



화성시 맑은물시설과에서 근무기간 내에 금번 규제로 인하여 업체 간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전준비와 현장의 이해없이 만들어진 이중규제로 인하여 기존 상수도 누수복구업체는 사업을 포기하거나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인력과 장비를 보유해야만 했습니다.

투자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하는 업체가 발생되었고 상수도누수복구 업무에 차질과 함께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었습니다. 행정의 규제로 인하여 사업자의 부담과 더불어 시민의 불편이 함께 이어지다보니 불필요한 규제라고 판단되어 규제 개선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관련 지침의 개정으로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에 따른 투자비용이 절감되어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제도가 좀 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긴급 누수복구공사의 경우에는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이 아닌 종전과 같이 상수도설비공사업자가 시행함이 타당하다는 환경부의 유권해석과 함께 수도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 2024년에 규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상수도설비공사업을 보유한 총 8,700여 개의 업체가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없이 누수복구사업에 참여함으로써 투자 비용 등 기업 운영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기를 바라며, 또한 신속하고 원활한 누수복구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기업과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곳곳에 숨겨진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아 해소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